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76 발의연월일 : 2022. 9. 15.

발 의 자:민병덕·강민정·강준현

권인숙 · 김경만 · 김민기

김성주 · 김승원 · 김정호

김한규 · 김홍걸 · 민형배

박영순 · 송재호 · 신정훈

신현영 · 양이원영 · 오영환

위성곤 • 유정주 • 윤건영

윤영덕 • 윤재갑 • 이성만

이수진॥ • 이용빈 • 이워택

이타희 • 이학영 • 임종성

한준호ㆍ허 영ㆍ허종식

황운하 의원(34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. 재 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, 재난으 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 정임.

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,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.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 도를 마련하고자 함.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34조제6항은 "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"라고 명시하고 있음.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, 재해 피해자가 "온전한 일상 회복"이 가능하도록 "실질적인 피해복구"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"온전한 일상 회복"이 가능한 수준의 "실질적인 피해복구"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 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(안 제6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).
- 다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세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며,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'주 생계수단 피해'에 상업을 추가하고,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(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).

라.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,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'절차 조항'을 삭제함(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중 "주거용 건축물"을 "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중 "생계안정"을 "일상회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중 "농업"을 "상업·농업"으로 한다.

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 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

제66조의2제1항 중 "지급할 수 있다"를 "지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

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구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
	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
	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
	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③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	
구와 <u>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</u>	<u>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</u>
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	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
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	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
<u>있다</u> 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	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	<u> 다</u>
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	
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	
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	
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	
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	
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	
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	

다.

- 1. (생략)
- 2. <u>주거용 건축물</u>의 복구비 지원

<신 설>

3. ~ 4. (생 략)

- 5. 세입자 보조 등 <u>생계안정</u> 지 위
- <u>6.</u> (생 략)
- 7. 주 생계수단인 <u>농업</u>・어업・ 임업・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<u>8.</u> ~ <u>9.</u> (생 략)

④ ~ ⑦ (생 략)

제66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 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

1. (현행과 같음)
2. 주거용 건축물 및 상업용 건
<u>축물</u>
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
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
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
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
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
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
지원
<u>4.</u> ~ <u>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
와 같음)
6일상회복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<u>8.</u> <u>상업·농업</u>
<u>9.</u> ~ <u>10.</u> (현행 제8호 및 제9
호와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166조의2 ①

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하 "복구비등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③・④ (생 략)

<u>z</u>]
급하여야 한다.
<u><</u> 삭 제>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